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황숙희 의원 외 6인
2. 개정이유

「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개정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(2019.2.11)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

3. 주요 내용

가. “공무국외여행규칙”을 “공무국외출장규칙”으로 규칙명 변경

나.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(안 제4조)

- 심사위원회 위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, 민간위원 비율을 2/3이상으로 확대

다.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(안 제8조)

- 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고,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

라.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강화(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)

-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등 결과 보고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공무국외출장규칙

○ 기　　타 : 규칙안예고(2019. 8. 26 ~ 2019. 8. 30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규칙안은 「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개정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여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을 공무국외 출장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하고,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심사기능 강화, 출장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연수제도 운영 과 의정 분야에 활용하는 등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본 규칙을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